

## 2026년도 AI·디지털기반 창업인재양성 사업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디지털 기술 분야의 다학제 간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이를 창업으로 연결하여 대학(원) 연구자가 국내외 시장을 주도하는 창업가형 석·박사급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6년도 AI·디지털기반 창업인재양성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원)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7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시 중점 고려사항 안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는 ICT R&D 우수성과 결과물이 R&D로 끝나지 않고 후속연구 및 시장으로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새롭게 시행하는 사항들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안내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 후 반영하여 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R&D가 R&D로 끝나지 않고 혁신적인 기술 및 파급력 있는 성과창출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계획서에 적절하게 반영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과제 선정 이후 연구자의 이행사항 안내 】

ICT R&D 연구자간 시너지 향상과 우수성과 결과물이 R&D로 끝나지 않고 시장으로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수행시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① 연구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IITP에서 진행하는 각종 평가에 최소 1회/년 참여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자와 피평가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평가 운영을 위해 IITP에서 진행하는 각종 평가·검토에 참여하신 연구자분들은 과제 기획위원 또는 정부정책 및 사업추진 관련 전문가 회의시 우선적으로 위촉하여 드릴 예정이오니,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② 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은 '기술교류회', '성과발표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합니다.

③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에 의거하여 수행중인 연구과제 중단 여부 또는 목표 변경 등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

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④ 연구기관 및 연구자는 수행 중이거나 종료된 과제에서 우수한 성과가 창출된 경우, 관련 성과물(논문, 특허, 표준화, 기술이전 등)을 부처(과기정통부 등) 및 IITP에 통보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구기관 및 연구자는 성과 홍보 시(각종 전시 참여·홍보 등) 다음의 사사(acknowledgement) 문구(안)를 포함하여야 하며, 언론 홍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IITP와 협의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문구 예시) ~~(중략) 0000 연구성과는 과기정통부·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0000사업'으로 수행한 결과입니다. (생략)

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기술료 등 납부 의무기관)은 과제협약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협약서'와 '기술기여도 산정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술기여도 수정이 필요할 경우, 최종평가지 명확한 성과활용·사업화 계획을 반영한 '기술기여도 산정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평가위원들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기술료\*는 국가R&D 재투자와 선행연구, 기술이전 촉진·성과확산 등 R&D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로, 기술료 납부계획 확약 및 성실한 납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실시(연구성과의 사용·양도·대여) 또는 제3자실시 등을 통해 수익(매출액)이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제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과 우리나라 ICT 기술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1

## 사업개요

- (사업목적) AI·ICT 유망기술 분야의 다학제 간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이를 창업으로 연결하여 대학(원) 연구자가 국내외 시장을 주도하는 창업가형 석·박사급 핵심 연구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
- (지원기간) 6년 (1단계 : 3년, 2단계 : 3년)
  - \* 단계평가를 통해 인력양성 및 연구성과 등 목표 달성 시 계속 지원
  - \* 1차년도 연구기간은 '26.7월~12월(6개월)로 하되, 평가 및 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규모) 과제당 총 55억원 이내
  - \* 과제당 1차년도 5억원, 2차~6차년도 10억원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6년 7월 협약 기준으로, '27년(2차년도) 이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예산 상황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 단계평가 시 연구개발 계획 대비 사업수행 성과의 비교 평가를 통해 연구비를 차등 지원 (7% 내외)함

◆ 총 사업비는 국비(정부지원금)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으로 구성

◆ 정부 출연금의 10%(현금)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매칭 의무화

▷ 주관기관 단독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에서 정부출연금의 10% 현금 부담

\* 예시 : 주관기관(A대학)에서 정부출연금 10억의 10%인 1억원을 매칭하여 총 사업비는 11억원

▷ 주관기관과 공동기관(영리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과제를 수행 할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을 적용하며, 기업의 법정 최소부담으로 부족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함

\* 다만, 과제특성·연구범위·성과활용 계획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과 공동기관 간 협의를 거쳐, 공동기관은 규정상 최소 부담기준을 초과하여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할수 있음

▷ 협력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매칭 의무 없음

○ (공모 방식) 자유공모

트랙	선정 과제 수	1차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차년도 이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자유공모형	4개	과제당 5억원	과제당 연 10억원 예정

○ (지원내용) 융합프로젝트 고도화 연구, 창업교육과정 개발, 창업지원 등 운영비

\* 연구개발비의 편성 및 집행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름

\*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3조에 따라 집행(단, 편성된 간접비의 60% 이상은 본 사업에 활용(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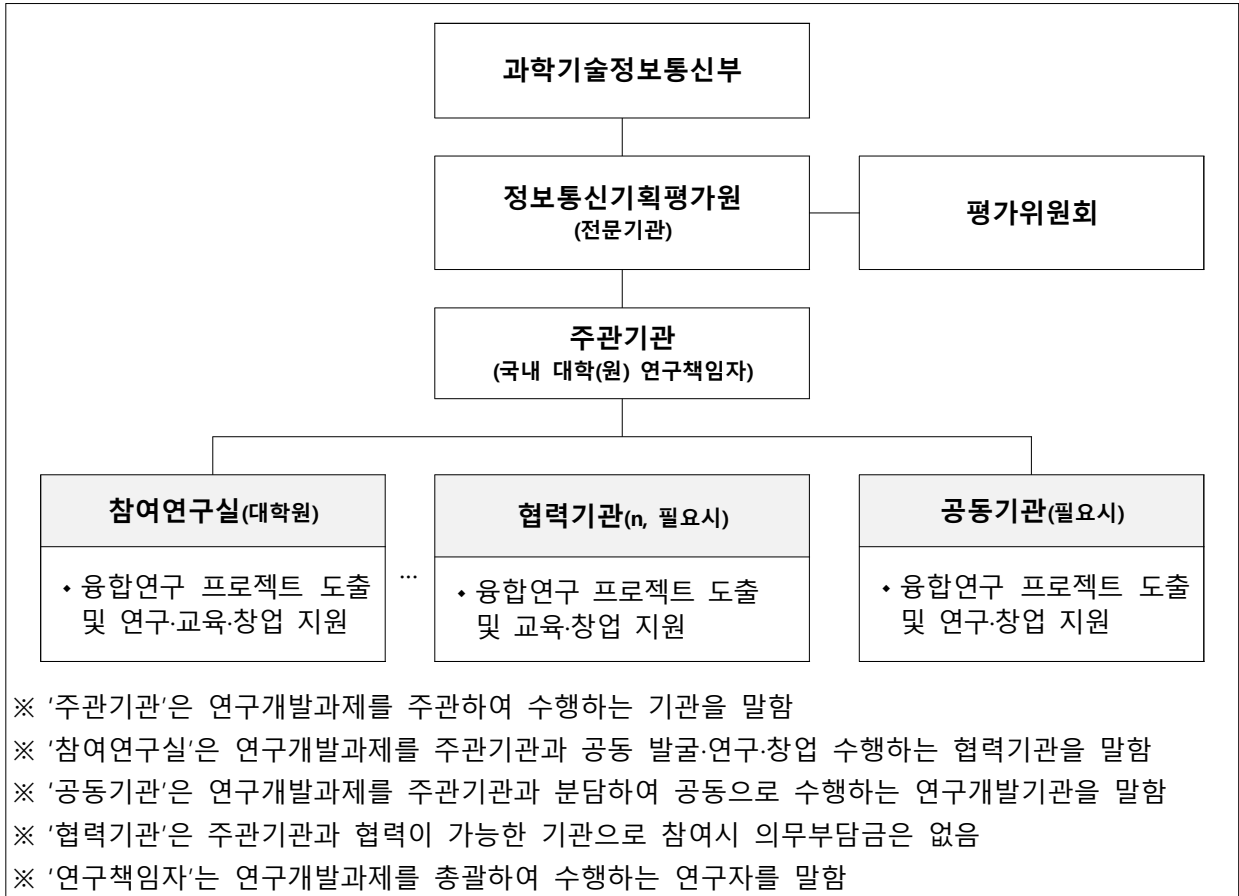
## 2

## 관련규정 및 추진체계

### □ 관련규정

<b>근거법령</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li> <li>*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li> <li>○ 과학기술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li> <li>○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li> <li>○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 기타 관련 법령 일체</li> </ul>
<b>관련규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및 관련 지침</li> <li>○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li> <li>○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li> <li>※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R&amp;D사업 관리를 위한 과기정통부 고시 등 준용</li> </ul>

## □ 사업추진 체계



## □ 기관별 구성 및 역할

구성	기관	사업 수행 시 역할
주관기관	거점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학제적 융합 연구프로젝트 구성 및 평가</li> <li>- 핵심 AI 등 기술력을 기반으로 참여연구실의 기술적 고도화 지원</li> <li>- AC/VC 전담 멘토링 체계 구축을 통한 시장 적합성 평가 지원</li> <li>- 학제 유연화(연구참여 학생의 학점인정, 교수 업적평가 등) 적용</li> <li>- 산·학 네트워킹 성과 교류회 개최</li> <li>- 창업 특화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Micro Degree 등)</li> <li>- 기업 현장 데이터 공유 및 연구인프라 제공 등</li> <li>- 1명 이상의 행정전담인력을 운영해야 함</li> </ul>
협력기관	참여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메인 전문 분야의 현안 및 제품·서비스 기반 융합 프로젝트 발굴 및 연구</li> <li>- 거점대학(AI Hub)의 창업 특화교육과정 이수</li> <li>- 석·박사과정 학생의 현장 밀착형 공동연구 참여 지원</li> <li>- 기업 현장 데이터 공유 및 연구인프라 제공 등</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융합연구 프로젝트 도출 및 연구·교육·창업 지원</li> </ul>

### □ 주관기관 신청자격

- (신청자격) AI·ICT분야 대학원이 설치된 국내 대학(원)
  - (주관기관) 국내 대학(원)
  - 신청대상 : 4개 광역권(동남권, 동북권, 충청권, 호남권) 소재지 대학(원)을 신청대상으로 함('26년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지 대학(원)은 주관기관으로 신청 불가)

◆ **주관기관(거점대학, AI Hub)**은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국내 대학으로 과제의 총괄 수행 및 연구개발 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단독으로 과제를 신청·수행할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동시수행제한과제'에 해당되지 않음 (3책5공 비적용)
- 지원분야(일반)에 대학은 연구책임자 및 연구내용의 차별성이 있는 범위내에서, 중복지원이 가능하지만, 동일내용으로는 중복 지원신청이 불가
  - \* 참여연구원은 중복 지원 가능(예, A과제 연구책임자가 B과제 참여연구원 가능)
- 해당 지역은 본교 소재지를 기준, 별도 법인 등록된 분교는 해당 소재지를 기준
- 캠퍼스는 동일 대학을 의미하며, 교육부 고시 기준 분교인 경우 별도 대학으로 인정
- 주관기관은 거점대학이 타 도메인 참여연구실을 협력 연구기관으로 구성
- 과학기술특성화 대학(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별도 참여제한은 없음
- 참여연구실(Spoke)은 다양한 분야 연구실 융합, 연구프로젝트를 공동 발굴·연구하는 대학(원)의 연구실(필수 구성)로 '26년에는 연간 최소 5팀 이상 발굴·운영

◆ **협력기관**은 해당 연구프로젝트를 공동 수행하는 기업, 연구소 등으로 구성 가능

※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가 상기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접수취소 또는 사전지원제외 됨

- (참여연구실) 연구 프로젝트를 공동 발굴·연구·창업하는 대학(원)의 연구실로 공동기관이 아니며, 협약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매칭 의무가 없는 협력기관을 말함
- 신청대상 : 수도권 소재지의 대학(원) 참여가능

### □ 참여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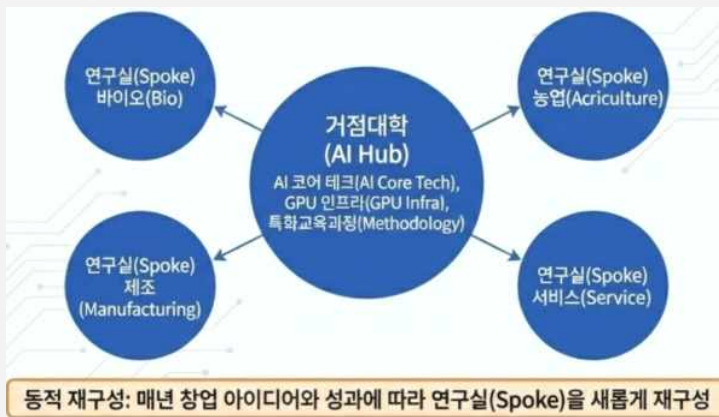
- 주관기관(거점대학·AI Hub)과 참여연구실(Spoke)이 연합체를 구성, 대학 연구실간 학생 융합 교육·연구와 지역산업 AX 가속화를 지원하는 석박사급 AI·디지털 기반 창업가형 고급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사업 신청 제안의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음**

- 단순한 AI 기술개발을 넘어 실제 현장의 난제를 발굴하고 다학제적 협력을 통해 이를 해결하며, 최종적으로 창업과 사업화로 가치를 증명하는 실전형 석박사급 인재양성 추진
- 주관기관(거점대학·AI Hub)의 AI기술력 기반으로 다른 연구실/대학(원)생(Spoke) 간의 연합 팀 구성을 통해 팀 프로젝트 고도화
  - \* 팀 구성은 거점대학 연구실 석박사생(1인 이상)을 포함하여 자율적 참여 구성

- 단기간 내의 창업 성공이 아닌 '프로젝트 발굴에서 창업까지 단계별 지속 지원
- 특정 권역에서 개발된 AI 에이전트를 타 권역의 유사 산업 현장에 적용(교차 검증)하여 기술의 범용성과 시장 확장성을 테스트
- AC/VC를 창업전담교수(겸임)로 임용하여 사업 계획·커리큘럼·강의·평가에 참여
  - \* Demo-Day를 통해 투자자와의 접점을 상설화하고, 시장 피드백을 연구에 반영
- 창업 준비 기간을 연구 학기 및 인턴십으로 인정하는 유연한 학사 운영을 추진하고, 기술이전·특허 및 창업 지도 실적을 교수 업적 평가에 반영(없는 경우 개선)
- 창업 과정에 도전·경험을 쌓은 인재들이 대학원에 복귀 시 연구비를 우선 지원하여 창업 경험이 연구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는 '리턴십(Returnship)'과 Alumni 네트워크 등 '에코 시스템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인재의 선순환 성장을 지원

< 연구실 간의 운영 협력 구조 >



- \* **거점대학(AI Hub)** : 핵심 AI 코어 기술을 보유하고 컨소시엄을 총괄하며, 연구 인프라 제공 및 AI기술력 기반으로 딥테크 기술창업 검증 허브 역할 수행
- \* **참여연구실(Spoke)** : 창업적 아이디어를 가진 다양한 도메인의 연구실(Labs)로 구성되며, 거점대학으로부터 기술적 고도화 지원 받음

◆ 특화 창업 교육과정 운영

- 주관대학은 전체 창업교육과정 및 교과목 운영(100%) 개설
  - ※ 주관대학 및 타 대학의 참여 연구실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현장 문제를 AI·디지털기반 기술로 해결(PBL)하는 Micro-degree 과정(최소 단위) 운영하고, 대학 간 학점 상호 인정
- '26년 가을학기 AI융합(AI, AX) 관련 석(박)사학위 과정에 특화된 창업 교육과정 운영
  - \* 대학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전문/일반대학원, 전공과정, 융합학과, 협동과정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형태는 대학 자율

◆ 창업가형 인재양성 성과 공유·확산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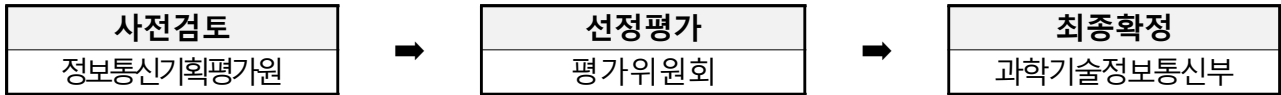
- 사업 수행대학 간의 우수 커리큘럼, 운영성과 공유, 협력안 발굴 등을 위해 「<sup>가칭</sup>AX선도 창업가형 인재양성 협의회」 참여(필수)

※ 필수사항을 제외한 각 항목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자유롭게 제안

※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가 상기 신청자격 및 참여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 지원 제외됨

## □ 평가 절차

- 전문기관(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참여조건 등을 사전검토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평가(서면검토·발표평가)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최종 확정



## □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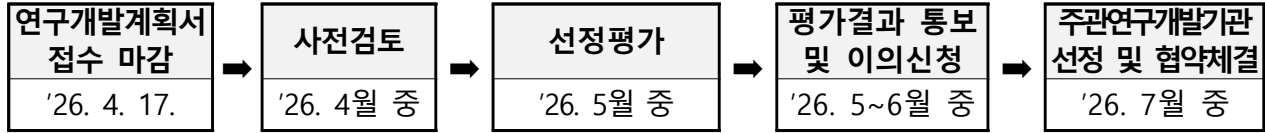
구분	주체	주요내용
사전검토	II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격 등 신청 적합 여부 확인</li> <li>- 신청자격 미달 및 필수서류 미제출 대상은 사전제외 원칙 단, 필요한 경우(오류 기재 등) 추가자료 제출 요구 가능</li> </ul>
평가위원회	서면평가위원회 (II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계획서 서면평가 실시, 발표평가 대상(2배수) 선정 (서면평가 결과 고득점 순*)</li> <li>* 서면평가 결과 60점 이상이라도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li> <li>※ 접수결과 최종 선정규모 3배수 내외일 경우 서면평가 생략 가능</li> </ul>
	발표평가위원회 (II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책임자 발표원칙</li> </ul>
최종확정	사업심의위원회 (과기정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결과에 대한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접수)</li> </ul>

※ 선정 평가계획 수립시 주요 절차 및 내용 등 일부 변경 가능

## &lt; 발표평가 항목 및 배점(안) &gt;

구분	평가항목	배점
사업수행역량 (40점)	• 연구책임자의 혁신성, 전문성 및 역할의 우수성	15
	• 주관, 협력기관 수행체계의 적절성	15
	• 주관기관 창업지원 인프라 우수성	10
창업가형 인재양성계획 (20점)	• 창업가형 특화교육과정 구성계획의 우수성	10
	• 창업가형 교육연구 교원 전문성 및 현장성의 우수성	5
	•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등 지원체계 적절성	5
연구분야 기술력 및 운영계획(25점)	• 연구분야 기술력 및 인프라 활용 우수성	15
	• 연구분야 프로젝트 발굴체계 및 지원계획의 우수성	10
성과관리 및 확산방안(15점)	• 성과관리 및 활용, 확산계획 적절성	10
	• 연구비 집행계획의 적절성	5
합 계		100

□ **평가일정(안)**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

□ **평가 시 우대(가점)에 관한 사항**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90점이상)” 판정 받은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 \*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우수”로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 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가 대상이며, 관련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 **평가 시 감점에 관한 사항**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가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과제의 경우(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 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신청하는 경우(1점)

□ **평가 관련 기타사항**

- '26년 신규 선정은 주관기관 소재지 4개 권역(수도권 제외)을 대상으로 종합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권역별 1개('26년은 4개)를 우선 선정

권역	수도권	동남권	동북권	충청권	호남권
주관기관 소재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

- 신규선정 종합평가(발표평가) 점수가 60점미만인 경우에는 ‘지원제외’하고, 권역내의 지원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평가대상의 종합평가(발표평가) 점수 순으로 타 권역에서 추가 선정함
  - ※ 단,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 접수결과 권역별 경쟁률(선정 예정 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 신청한 경우이거나 응모가 없는 과제인 경우, 해당 권역에 한해 2주간 공고를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단독(1:1) 신청 과제인 경우, 지원가능 종합평가(발표평가) 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 실시
  - \* 단독 신청 과제(권역 내)의 종합평가(발표평가) 점수가 75점 미만으로 탈락한 경우, 탈락한 과제를 포함한 전체 평가대상의 종합평가(발표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추가 선정함

- 평가계획에 따라 발표평가 외에도 현장방문평가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발표평가는 연구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계산한 후 가점 및 감점 점수를 포함시킴

## 5 기술료 징수

### □ 기술료 징수

#### ▶ 기술료 징수대상 및 상한

- 기술료 징수 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 기관'은 ①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②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기술료 상한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이 외의 기업
기술료 상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 ▶ 기술료 산정기준 및 납부 기한

- 기술료 산정 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이 외의 기업
① 실시계약 체결한 경우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
② 직접 실시할 경우	(수익금액×기술기여도)의 2.5%	(수익금액×기술기여도)의 5%	(수익금액×기술기여도)의 10%

- ※ '기술기여도'는 선정평가지 평가위원회에서 검증하고,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시 확정하며, 협약 이후 연구개발기간 이내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6월 30일까지 매출액 관련 자료(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를 제출해야 함

- 기술료 납부 기한

-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 ▶ 기술료 감면 및 납부 유예

### ○ 신규 채용에 따른 기술료 감면

- (신청대상)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 중 중소기업이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또는 사업화를 위하여 해당 업무에 활용할 청년인력(만 18세~34세)을 과제종료일로부터 최초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 제출일까지(제3자실시의 경우) 또는 과제종료일로부터 최초 매출액 관련자료(기술실시 결과보고서) 제출일까지(직접 실시 경우) 신규 채용할 경우

\* 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감면규모) 채용시점부터 2년간 해당인력에 대해 지급한 급여(성과급 포함)의 50%만큼 납부상한액에서 감면

\* 납부대상액에서 감면이 아님을 주의(예시 참고)

- (감면방법) 해당 인력 채용시점부터 납부기술료는 2년간 납부 유예조치, 유예기간 종료 후 고용유지 여부 및 타 정부사업에서의 인건비 지원 여부 등을 심사하여 기술료 납부상한액으로부터 감면 규모 최종 확정 후 통보

\* 유예기간에도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제3자실시) 및 기술실시 결과보고서(직접실시)는 제출되어야 함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유예기간 종료 또는 유예/감면 사유 소멸(해고, 퇴사 등) 시 해당 기업은 전문기관으로 해당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함

- (요건 미충족 시) 2년간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기술료 납부상한액으로부터 감면 미적용

\* 고용 인력 중도 퇴사 시 대체인력 채용을 허용하지 않음

### ○ 실시기업이 수요기업으로서 해당 과제에서 개발된 제품·장치·서비스를 구매한 경우(기술실시계약 체결 전까지 구매계약서 등으로 증빙하는 경우) 납부기술료 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

### ○ 산업위기대응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기술료 유예를 신청한 경우 2년 이내에서 연장

### < 예시 >

#### ○ 신규 채용에 따른 기술료 감면 적용 시

구분	납부상한액으로부터 일부 감면된 경우	납부상한액으로부터 전액 감면된 경우	비고
(실사용)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천만원	100천만원	
(최초)납부상한액	10천만원	10천만원	중소기업으로 가정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중소), 20%(중견)
감면 규모	6천만원	11천만원	2년간 지급 인건비의 50%
발생기술료	5천만원	5천만원	
매출발생1년차(유예)	1천만원	1천만원	
매출발생2년차(유예)	1천만원	1천만원	
매출발생3년차	1천만원	1천만원	
매출발생4년차	1천만원	1천만원	
매출발생5년차	1천만원	1천만원	
(변경)납부상한액	4천만원	0원	(최초)납부상한액 - 감면 규모
최종납부기술료	4천만원	0원	납부기술료 전체 금액은 납부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납부기한	납부 유예기간 2년 후 매출발생 3년차 기술료와 함께 납부	기술료등납부의무 소멸	

## □ 사전 지원제외 대상

- 신청과제가 공고된 내용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 국가연구개발(R&D) 관련 규정 참조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참여연구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참여연구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 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참여연구자 등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확인근거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li> <li>*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5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li> <li>*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4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또는 창업 2년 미만의 기업은 전년도말 추정재무제표로 판단</li> <li>■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을 위해 제출한 서류 일체</li> </ul>
----------------	--

※ 접수 마감일까지 '25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25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협약 완료 전까지 '25년도 결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25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 영리기관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아래의 경우 현금 산정이 가능함 >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 ※ 신규채용 연구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임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연구개발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자 현금 인건비만큼의 기존인력 인건비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년도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 시 해당년도 기존 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불인정함
  - 신규 채용인력의 해당년도 현금 인건비가 해당년도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연구개발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불인정함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단, 신청시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도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인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
- 연구개발과제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다만, 기업이 보유(제공)한 자원 기반의 연구 수행을 통한 연구 결과물은 기업이 우선 소유할 수 있으나, 수행기관 간의 협의에 따른 조정 가능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국외기관이 과제수행에 참여하여 해당 국외 수행기관의 수행결과로 발생한 연구개발 성과는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 연구과제 보안에 관한 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신청 과제가 “보안” 등급일 경우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는 연구개발과제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신청자는 보안과제 운용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 연구장비 도입·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 연구개발기관은 구매 예정인 연구장비(SW포함)에 대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우선 도입해야 함
  -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www.digitalmarket.kr)’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Ezbaro)을 이용하여 연구개발비(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사용 관리하여야 함
  - \* 통합Ezbaro를 적용한 과제의 연구개발비 정산 서류는 통합Ezbaro 시스템에 등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일부 제출 서류를 간소화(생략) 할 수 있음
- 통합Ezbaro 연구개발기관별 연구개발비 지급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의거 각각 일괄지급방식 및 건별지급방식을 적용
  - \* 일괄지급방식 :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일시불 또는 협약으로 정한 시점에 분할하여 지급하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후 5일 이내에 사용내역을 통합Ezbaro에 입력하는 방식
  - \* 건별지급방식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 일부의 사용을 위하여 지급을 신청하는 금액을 연구개발기관에 건별로 지급하고,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내역(증명자료를 포함)을 통합Ezbaro에 입력하는 방식

##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자유공모 과제로 해당 없음

## □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등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및 지침을 준용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6년(1차년도)에 한정하여 확정되었으며, 지원기간 및 '27년도(2차년도) 이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향후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신청방법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전산접수
  - \* (IRIS, <https://www.iris.go.kr>) 사업공고 또는 IITP(<https://www.iitp.kr>) 사업공고에서 관련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 ※ 관련 법령 개정 등 주요한 변경 사항 발생 시 수정 공고문을 게시할 수 있음

## □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신청서류) 제출

- 2026. 3. 17(화) ~ 2026. 4. 17(금) 15:00까지 (31일간)

공고기간	전산(iris.go.kr) 등록기간
2026. 3. 17(화) ~ 2026. 4. 17(금) <b>오후 3시 까지</b>	2026. 4. 6(월) ~ 2026. 4. 17(금) <b>오후 3시 까지</b>

- 신청서 전산등록 마감시간(오후 3시) 전 까지 반드시 전산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 마감 당일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이 불안정 할 수 있으므로, 마감 하루전 제출 완료를 권장함
- 마감시간(오후 3시) 이후에는 수정 및 전산등록 불가함
- 신청서식의 해당하는 모든 제출서류를 온라인(전산접수)에 등록 완료하여야 함

## □ 제출서류

번호	서류명	제출형식	제출처	비고
1	연구개발계획서(필수)	전자파일 (HWP)	전산 등록 (IRIS)	-
2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필수)	전자파일 (PDF)		신청기관(주관/공동) 각각 작성 후 제출
3	연구개발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필수)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날장 제출
4	참여연구자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필수)			신청기관(주관/공동) 각각 작성 후 제출
5	사업자등록증(필수)			신청기관(주관/공동) 각각 제출
6	우대사항 증빙서류 각 1부(선택)			해당 신청기관만 제출

- 1, 2, 3, 4번 서류는 공고에서 제공되는 양식을 사용하여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는 1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5번 우대사항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 단, 제출 증빙서류에 대한 추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 보완 등을 신청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 필요에 따라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제협약 시에도 추가서류 요청 가능

### 신청 시 주의사항

-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 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과제 접수 전 조치 필요
-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접수시스템(www.iris.go.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 신청기관 실수로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고를 혼동하여 타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고에 접수한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가점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전산입력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학인 경우 신청기관은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신청

## 8

### 사업설명회

구분	주요내용
일 시	▶ 2026. 3. 26(목) 14:30 ~
장 소	▶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건물 우암홀(5층) * 대전 KTX역(5번출구) 옆
주요내용	▶ 신청방법,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 신청 안내 및 질의응답

※ 본 사업설명회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IITP 홈페이지(iitp.kr) 공지사항을 통해 추후 안내 예정

## 9

### 문의사항

구분	문의처
사업관련 문의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디지털선도인재팀 ☎ 042-612-8429, yslim@iitp.kr
전산등록(시스템 입력) 관련 문의 (http://www.iris.go.kr)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담당자 ☎ 1877-2041

## 참고

## 사업설명회 개최장소 위치안내



### 회의실 오시는 길

위치 :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1층·5층 회의실  
KTX 대전역 5번(서부) 출입구에서 오른쪽으로 50M 이동



### 대전충남본부(대전역)

이용문의	전화번호 : 042-259-2218 문의 : 09:00 ~ 17:30 (토,일,공휴일 제외)
주차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전역 선상주차장 및 서광장1,2 주차장</li> <li>- 기본 30분 : 1,000원(10분 초과시 300원)</li> </ul>